

「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 공공위탁  
동의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은 미래 신산업 분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허리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
-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1) 추진근거

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나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다)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조례」 제8조, 제9조

라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2) 필요성 : 기업 발굴, 선정, 사업관리, 컨설팅, 상담 등을 위해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기업·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,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 필요

다. 위탁 사무 내용 :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 업무 전반  
 1) 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위원회 구성·평가, 허리기업 선정  
 2) 기업 간담회 실시, 허리기업별 전담PM 매칭, 과제 추진현황 점검  
 3) 사업 추진결과 검토, 지원기업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확산 지원 연계  
 라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마. 위탁기간 : 2026. 2. ~ 12.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800백만원(시비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간접비	사업비	비고
800	160	80	560	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(251226)

아.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자. 부서의견 : 기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

#### 4. 참고사항

##### 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-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조례」 제8조, 제9조
-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##### ○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##### ○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: 적정(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)

##### ○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
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 1. 1. 시행)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동의안은

-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관내 제조 기반 허리기업<sup>1)</sup>을 발굴·육성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다수의 기업지원사업 수행 경험과 기업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, 본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한 기관으로 판단됨.
- 특히, 본 사업이 최대 2년간 추진되는 자율선택형 패키지 사업임을 고려할 때, 연속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의 연임 등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성과평가 및 감사를 실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·감독 체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---

1) 핵심 소부장 기업에 소재·부품·장비 등을 공급하는 중간단계 기업(매출액 50억~500억 규모)